



본사업장에서는 다른사업장을 위탁경영하고 있으나 주소지는 동일단지가 아니고, 대표자는 사업장별로 각각 있습니다. 안전관리조직 또한 사업장별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위원회는 한사람이고 위탁경영 사업장에는 부위원장이 있고, 노사협의회나 단체협약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사업장별로 각각 구성하여 별도로 개최해야 하는지요? 또한 안전관리규정은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 근로자수는 우리사업장이 1,000명이상이고, 위탁사업장은 1,000명 미만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한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구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고, 각 단위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이상(유해·위험사업은 50인이상)인 경우에는 단위사업장 별로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사업이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고, 각 단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100인미만(유해·위험사업은 50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업을 총괄하는 주된 사업장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2.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규정으로서 각각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각의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할 것이나, 같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등 사업의 형태가 동일한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용범위를 명기한 하나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각의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만성간염보균자 A양성 보균자라 취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해서 좋은 회사를 눈앞에 두고도 원서쓰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질병자의 근로금지 조항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률로서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 / 정신분열증, 마비성치매 기타 정신질환에 걸린 자 / 심장, 신장, 폐 등의 질환이 있는 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의사의 의견을 들어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재직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외부에 GANG FORM을 설치하고 하부에 보통 2개층분의 다리를 설치하여 미장작업을 합니다. 이경우 통행을 위해 발판을 도면 규격에 맞추어 주문제작하는데 이러한 발판에 대하여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미장작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통행용 작업발판이 GANG FORM에 부착할 목적으로 주문·제작하여 그 시스템의 일부로서 설치 사용하는 것이라면 성능검정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개정된 특수건강진단실시 기본주기에 보면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기본주기가 1/2로 단축된다고 하였는 바, 금년(2000년) 상반기에는 망간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망간에 대한 특검 실시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작업환경측정결과치를 99년도 상, 하반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아니면 2000년 상반기 결과치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까? - 참고로 99년 상반기 결과: 미초과, 99년 하반기 결과: 초과, 00년 상반기 결과: 미초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의2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의 일시단축은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다음회에 한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거 단축되는 근로자는 직전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거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와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가 해당합니다.



20년 이상 탄광생활을 하다가 진폐판정(1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년전에 갑자기 시력을 상실하였고, 청력도 거의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님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자식으로 여간 가슴이 아픈게 아닙니다.  
시력상실과 진폐는 상관이 없는지 상관이 있다면 급여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또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노동부 산업안전국에서는 진폐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하여 석탄광업 등 8개 광업의 분진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이직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 검사결과에 따라 진폐관리 구분판정을 행하고 있으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함)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게 산재 장해급여의 60%를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폐로 인하여 산재유족급여의 대상이 되는 진폐근로자의 유족에게 산재 유족급여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위로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폐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질병은 활동성폐결핵 등 8개 질병이며, 시력·청력장애는 합병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 및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보상부(02-6700-4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